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8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김용민·민형배·장경태

문정복 · 김동아 · 부승찬

김승원 • 한민수 • 조계원

김문수 · 강준현 · 김현정

이재강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 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괴리가 있음.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지 검찰 권한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검찰청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여, 검찰이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설치를 핵심 골자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담보되며,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 등의 우려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수사기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고, 기소기관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의 합리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음. 따라서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공소청'을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며 각 지역에 지역공소청을 둠(안 제1조, 제2조).

- 나.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공소청 사무 총괄 및 공소청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5조).
- 다. 공소청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6조).
- 라. 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범죄정보 및 수사 정보를 전담하는 직제와 검증 관련 직제는 둘 수 없음(안 제9조).
- 마. 지역공소청에 지역공소청장을 두고, 지역공소청장은 그 공소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0조).
- 바.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3조).
- 사. 공소청에 검사를 두며,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아. 검사는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 및 감독,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함(안 제18조).
- 자. 검사는 공소청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이의제기 할 수 있음(안 제20조, 제21조).
- 차. 검사의 임용, 보직,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안 제24조).
- 카.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
- 타. 검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
- 파. 공소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공소청 직원의 직제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4조).
- 하. 기소 및 불기소 적정성, 영장청구 등에 관한 적정성, 검사의 각종 처분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공 소심의위원회를 두며, 공소청에 대한 감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둠(안 제37조, 제39조).
- 거. 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검사 또는 공소청장 이외의 직 무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40조).
- 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지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지역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안 제41조).

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730호)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의안번호 제10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소청)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 ② 공소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공소청을 두고, 지역공소청 소속으로 지청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인구의 수, 교통, 지리적 면적 등 그 밖에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1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에 2개 이상의 지역공소청을 둘 수 있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의 지역공소청을 둘 수 있 다.
 - ④ 공소청의 위치와 지역공소청 및 지청의 설치, 명칭과 위치 및 그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제2장 공소청

- 제5조(공소청장) ①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대한민국헌법」 제8 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 ② 공소청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공소청의 사무를 총 괄하며 공소청의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
 - ③ 공소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공소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⑤ 공소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공소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 제6조(공소청장의 자격과 임명) ① 공소청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 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 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제7조(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공소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법무부 차관
 - 2. 법원행정처 차장
 - 3. 대한변호사협회장
 -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 ⑦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⑨ 추천위원회는 공소청장 후보자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공소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① 추천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공소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차장) ① 공소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공소청장을 보좌하며, 공소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직제) 공소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범죄정보 및 수사정보를 전담하는 직제와 검증 관련 직제는 둘 수 없다.

제3장 지역공소청 및 지청

- 제10조(지역공소청장) ① 지역공소청에 지역공소청장을 둔다.
 - ② 지역공소청장은 그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1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 ② 지청장은 지역공소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지역공소청과 지청의 차장) ①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을 둔다.
 - ② 차장은 소속 지역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역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직제) ①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역공소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검사

- 제14조(공소청, 지역공소청, 지청 검사) 공소청, 지역공소청 및 지청에 검사를 둔다.
- 제15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제16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8조(검사의 직무) 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4. 재판 집행 지휘 · 감독
 - 5.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19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소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 제20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는 직무에 관하여 직무관할의 범 위 내에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제21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0조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공소청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 ③ 공소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소청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⑤ 그 밖에 검사의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공소청장, 지역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은 차장 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소청장, 지역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은 차장 또는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소청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 여는 공소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24조(검사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보직,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검사 3명
 -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5.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 아니한 사람 2명
-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소청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소청인사 관계 법 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2. 검사의 임용 ·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정기준 중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률 및 무죄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투명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⑤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정원) 검사(공소청장을 포함한다)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공소청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4명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31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정년)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 제33조(정치 관여 금지 등) ① 검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 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3.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
 - 4.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5.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 에 관여하는 행위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 2.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제5장 공소청 직원

- 제34조(공소청 직원) ① 공소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소청 직원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공소청 직원의 보직) 공소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소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3.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장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소청 감찰위원회

- 제37조(공소심의위원회) ① 기소 및 불기소 적정성, 영장청구 등에 관한 적정성, 검사의 각종 처분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외부 위원을 과반으로 한다.
 - ③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 조직, 권한, 운영 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공소심의위원회에 대한 신청) ① 공소심의위원회의 신청권자는 검사, 피의자, 피해자 및 피해자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② 공소심의위원회에 대한 신청은 재정신청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39조(공소청 감찰위원회) ① 공소청에 대한 감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둔다.
 - ② 공소청 감찰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40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제41조(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 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② 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

-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⑤ 제3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조직 및 운영) ①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소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공소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3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8장 벌칙

- 제44조(정치 관여죄)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45조(직권남용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

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 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중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직무는 공소청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중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직무에 해당하여 공소청이 승계할 수 없는 직무는 담당 기관에서 승계한다.
- 제3조(검찰총장의 지위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총장은 이 법의 공소청장으로 보고, 그 임기는 검찰총장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제4조(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및 검찰청직원은이 법의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으로 본다.